

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정안
<p>제4조(운영교과) ①현행 ②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학년도별-전공별 교육과정 편성과목 수의 30% 이내로 개설한다. 단,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운영교과) ①현행 ②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전공별 교육과정 편성과목 수의 30% 이내로 개설한다. 단,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과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
<p>제14조(기타) ①현행 ②현행 ③현행 ④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방법에 대한 변경은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14조(기타) ①현행 ②현행 ③현행 ④삭제</p>
<p>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, 학칙사행세칙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에 따른다.</p>	<p>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을 준용한다.</p>